

1. 개정이유

제조업·서비스업 기업 및 근로자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협정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업 지원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근본적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지원기업 지정 신청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절차 및 관련 서식 등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안 제2조)

-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관련 서식에 통상 조약 등으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나. 기술·경영 혁신 지원 신청에 관한 세부절차 규정(안 제3조)

- 1)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중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서식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 제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7. 00. ~ 9. 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1조의2를 삭제한다.

제2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서”로, “무역피해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통상영향(우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영 제6조제1항”을 “제1항”으로, “담당 공무원은”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의”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무

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상담지원신청서 등)”을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상담 지원”을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을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융자지원신청서 등)”을 “(융자 지원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융자지원신청서”를 “융자 지원신청서”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융자금의”를 “융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무역조정 계획”을 “통상변화대응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출자지원신청서)”를 “(출자 지원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경영참여형”을 “기관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을 “(통상변화대응 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무역조정지원근로자의”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로,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제7조의 제목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 등)”을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서”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서”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담당 공무원”을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 통지서”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제8조의 제목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 등)”을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 통지서”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무역조정지원기업 지정 부지정 통지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부지정 통지서”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3호가목 중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 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9항제2호 중 “무역조정지원”을 “통상변화대응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무역조정지원종합대책”을 “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으로 한다.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	-------	-------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공장등록번호					
	⑫설립 연월일		업종	⑬업종명				
				⑭업종코드				
	소재지	⑮본사						
		⑯사업장						
	연락처	⑰전화번호		⑱E-mail				
⑲홈페이지주소		⑳FAX						

신청 현황	근로자수	⑳사무직	㉑자산총액	㉒자본금	
		㉒생산직			
			명	백만원	백만원
	주생산품목	㉓한글			
		㉔영문			
	통상영향 (우려)품목	㉕한글			
㉖영문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환경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영향(우려) 입증서	수수료 없음
통상변화대응 지원센터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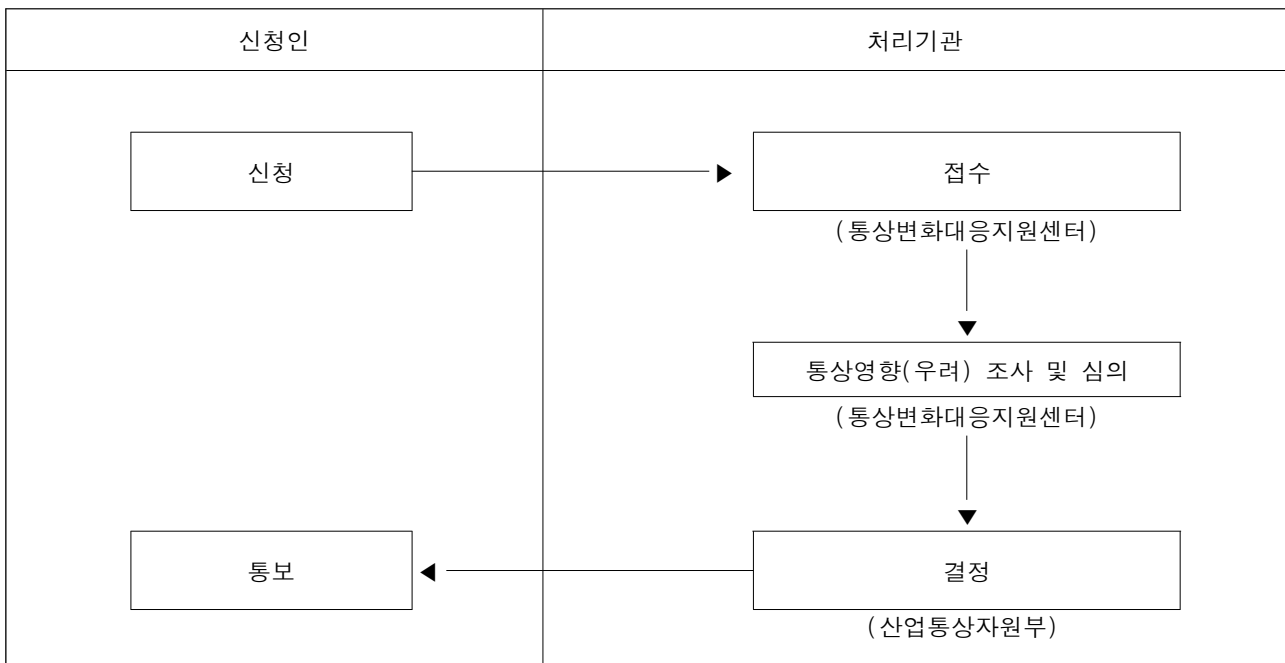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⑫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⑬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 ⑭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 ⑳과 ㉑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	-------	-------

신청인	④상호	
	⑤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번호	
	⑥통상영향(우려) 품목	
	⑦법인등록번호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 성명	⑩생년월일
	⑪사무소 주소	
	⑫담당자 전화번호	⑬E-mail
	⑭홈페이지주소	⑮FAX

⑯ 신청 내용	지원 희망분야	세부 내용
	생산관리	
	재무관리	
	기술개발	
	인사·조직	
	영업·수출·마케팅	
	노무·안전·환경	
	디지털·정보시스템	
	기타 분야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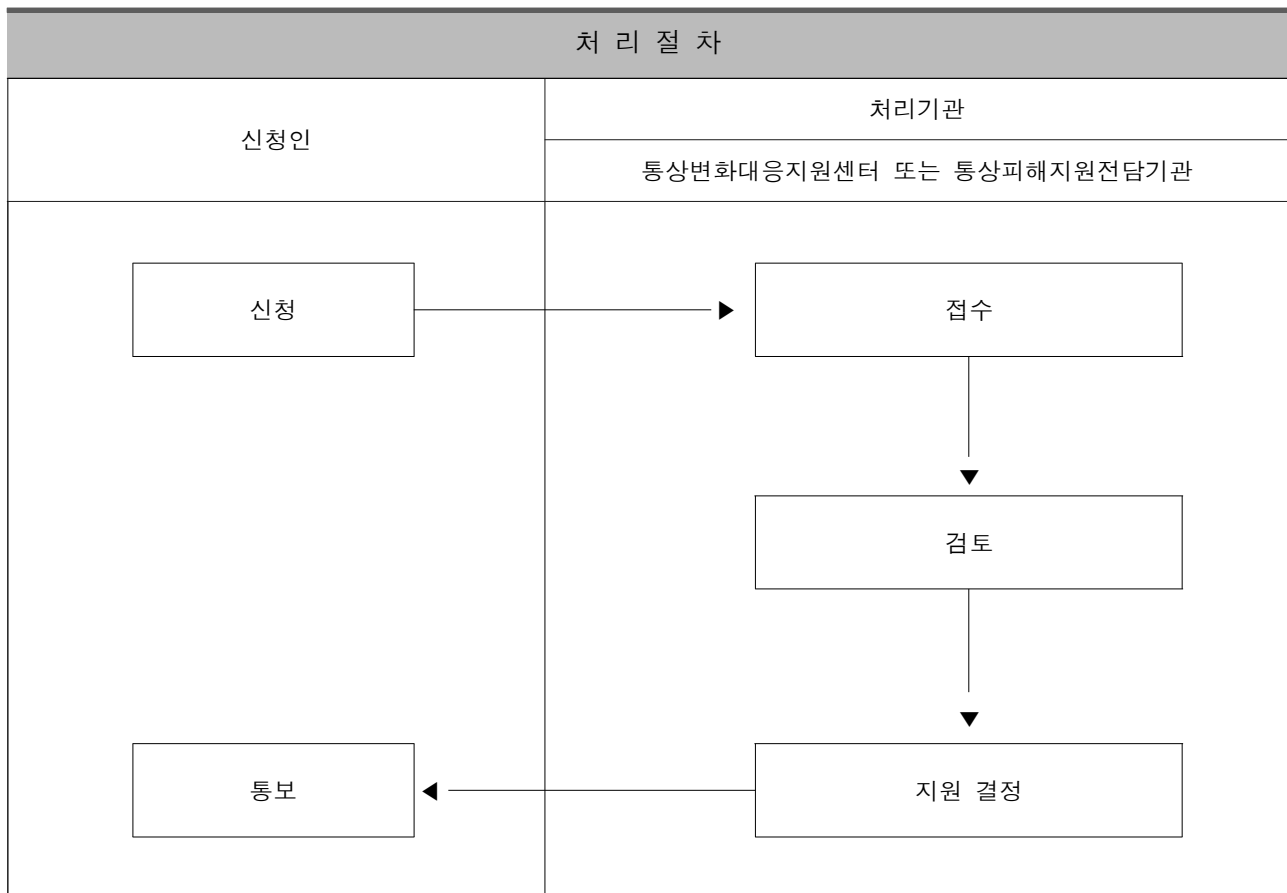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해당 없음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2. ⑫~⑬란은 신청인 대표 연락처가 아닌 기술·경영 혁신 지원 업무 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적습니다.
3. ⑯란은 전문가(전문기관)의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희망하는 분야 및 세부 내용을 기재하되, 복수 이상의 분야에 기재할 경우 지원 희망 우선순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



용자 지원신청서 ([] 신규 [] 추가)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	-------	-------

신청인	상호(명칭)	④ 한글	⑥ 법인등록번호			
		⑤ 영문				
	성명(대표자)	⑦ 한글	⑨ 생년월일			
		⑧ 영문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설립 연월일		업종	⑫ 업종명		
				⑬ 업종코드		
	소재지	⑭ 본사				
		⑮ 사업장				
	연락처	전화번호		E-mail		
홈페이지 주소		FAX				

신청 현황	⑯ 근로자 수	사무직	자산총액	자본금
		명		
	생산지	백만원	백만원	
				명
	신청금액	시설자금	소요금액	시설자금
		백만원		백만원
	운전자금	운전자금	백만원	
백만원				
담보 또는 보증	[] 신용 [] 부동산 [] 기타 [] 보증 ([] 신용보증기금 ()지점 []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점)			
희망대출 기관	[] 중소기업진흥공단 [] 은행 지점 [] 기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용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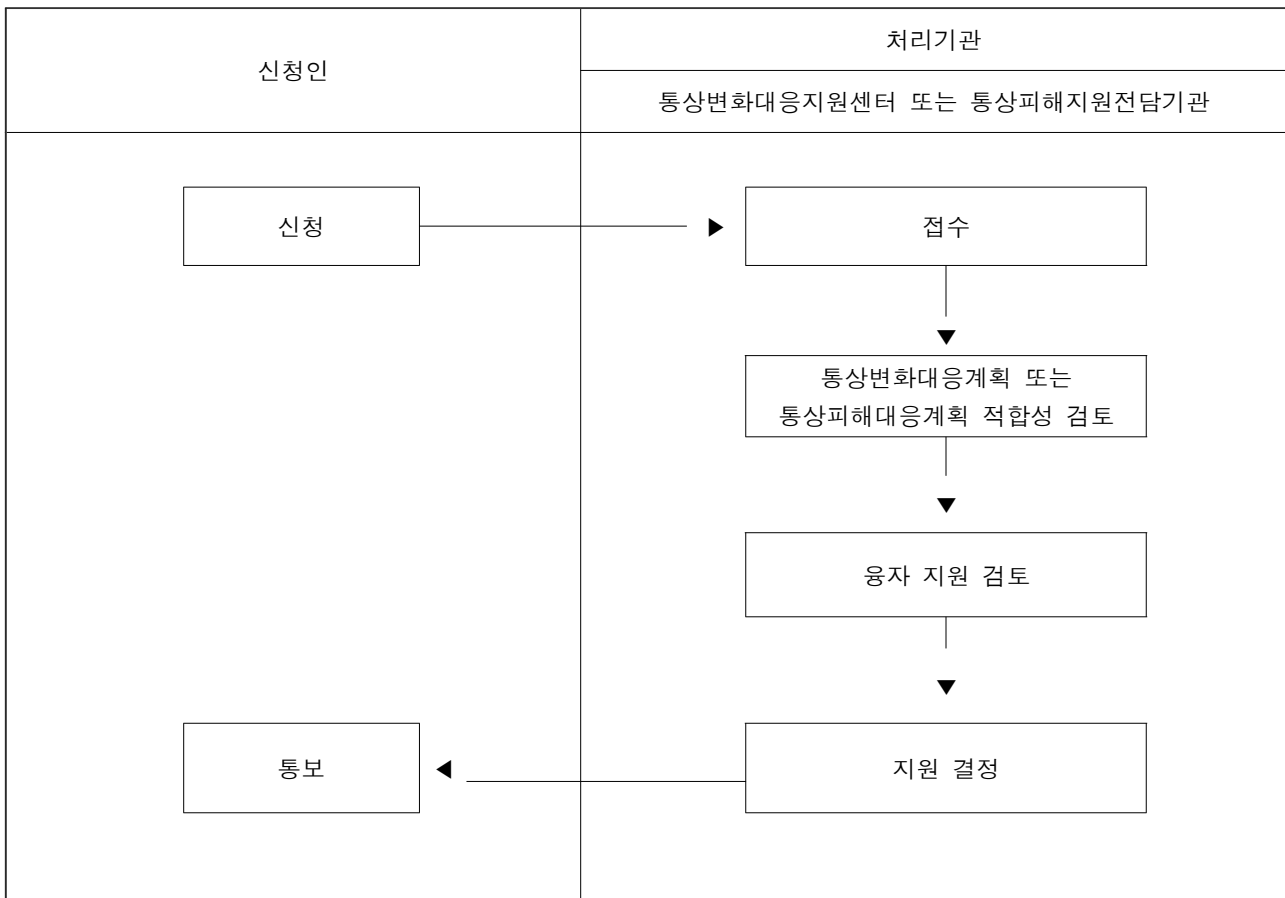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기업현황에 관한 자료 2.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가 확인한 것을 말합니다)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 된 서식을 말합니다)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통상변화대응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수수료 없음
-------------	--	-----------

작 성 방 법

-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⑫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 ⑬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 ⑯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통상변화대응계획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④ 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 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설립 연월일			업종	⑫업종명			
					⑬업종코드			
	소재지	⑭본사						
		⑮사업장						
	연락처	⑯전화번호			⑰E-mail			
⑱홈페이지 주소			⑲FAX					

1. 계획의 개요

⑳통상영향 개요 및 통상변화대응계획 추진 목적							
㉑시설 설치장소		㉒이행 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추진 계획요약	㉓기술 (서비스) 수급 계획						
	㉔인력수급 계획						

사업추진 계획요약	㉔설비추진 계획	
	㉕판로확보 계획	
	※ 통상변화대응계획 이행기간 내 기존 기술과의 연관성, 기존 인력·설비·거래처 활용여부 또는 신규 채용·투자계획·거래처 확보계획 등을 기술	

2. 세부추진계획

가. 통상 변화 대응 계획 상의 생산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개요: 기존 또는 신규	㉗제 품명 (상품 또는 서비스명)	
	㉘제 품용도 및 특성 (상품 또는 서비스 주요내용)	
	㉙기술 (서비스) 품질 경쟁력	- 대체·경쟁제품과의 차별성 - 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 품질, 가격 비교
	㉚상품 (서비스) 개발계획 및 생산/ 증산 계획	
	㉛기대효과 (수출증대 및 수입대체, 고용, 자원 활용 등)	
※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핵심기술(서비스)을 기술		

시장성	㉔판매 형태		주문판매(%), 시장판매(%), 임가공(%), (내수 %, 수출 %)									
	㉓경쟁 현황	제품명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 규모	국내생산 업체 수	주요기업체명		귀사의 동업계 지위		경쟁 상태			
					1순위	2순위	시설능력	시장지위				
※ 시장규모는 금액 또는 물량기준으로, 동업계 지위는 상·중·하로, 경쟁상태는 과당·보통·독점으로 기재												
나. 계획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계획	㉔판매계획 (단위: 백만원)	품목명 (상품 또는 서비스)	해당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생산능력 (수량·금액)	판매처 (업체명)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합계										
* T: 기준연도 ※ 4사분기 신청업체의 경우, 차기연도가 1차년도에 해당함. ※ 수출금액은 원화로 환산표기하고 추정기준환율을 기재함(1\$: 원) ※ 주요품목(상품 또는 서비스)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기타로 묶어 합산기재함												
㉕ 다. 설비 투자 계획 (단위: 백만원)	시설명	규격	수량	단가	소요금액 (VAT 제외)		제작사 (국산/외산)		설치 시기			
※ 필요시 별지작성												

라.자금
조달
계획

㉔총소요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시 설 자 금	기계시설			
		시험검사설비			
		기타			
	운 전 자 금	기술개발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등			
		기타			
	합계				
㉕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금액		비고
	총 소요금액		시설		
			운전		
	조 달 계 획	자체자금	시설		
			운전		
		통상변화대응 지원자금 융자	시설		
			운전		
		은행자금 등 기타	시설		
			운전		

㉖ 마.기술· 경영 혁신 지원 추진 계획	구분	내용
	추진목적	
	추진시기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	
	※ 기술·경영 혁신 지원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은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직전연도 (T-1년)	해당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㉔ 바.재무 계획 (단위: 백만원)	대차대조표					
	총자산					
	자기자본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손익계산서	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 T : 기준연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변화대응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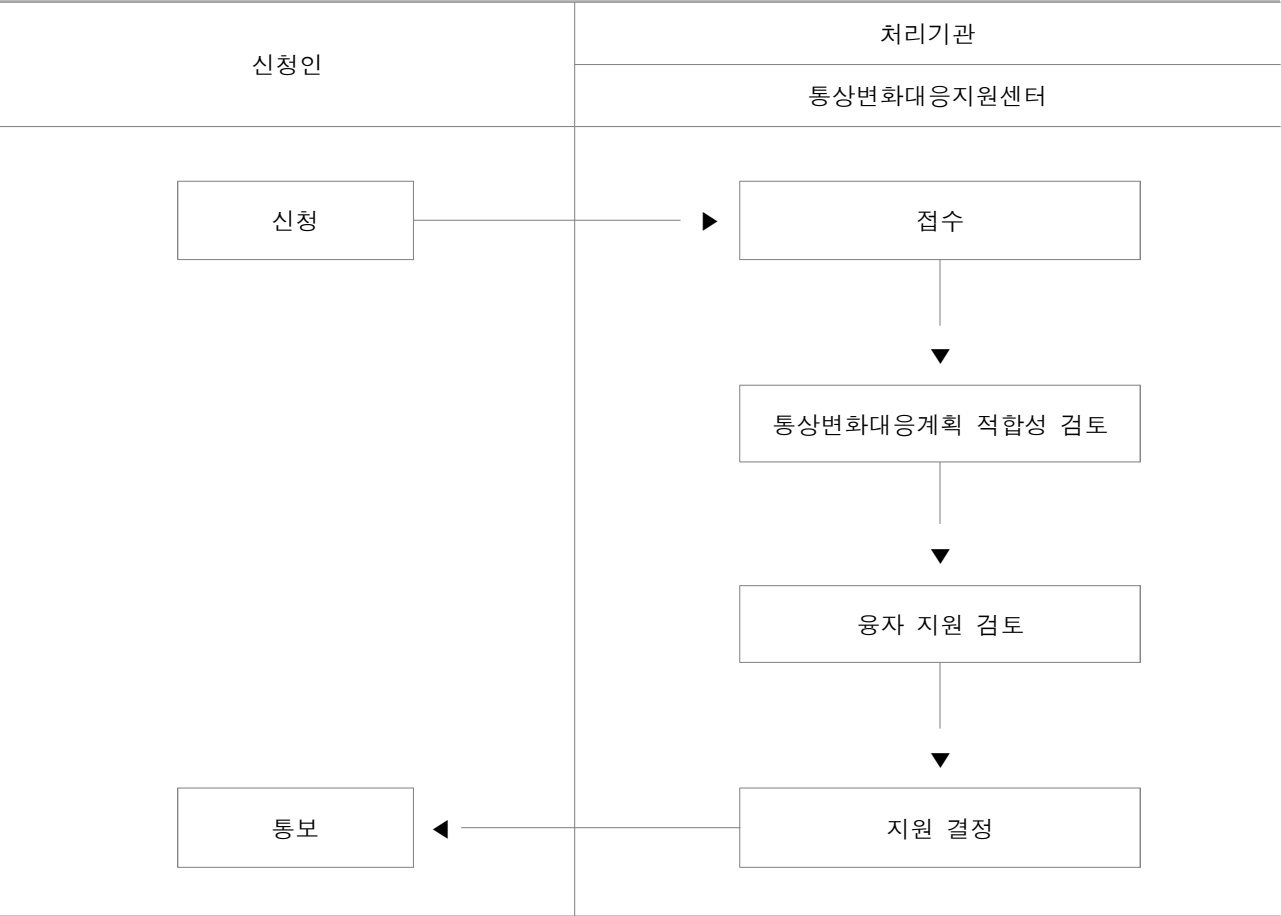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귀하

작성 방법

-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2.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3. ⑫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 4. ⑬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통상피해대응계획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설립 연월일				업종	⑫업종명	
						⑬업종코드	
	소재지	⑭본사					
		⑮사업장					
	연락처	⑯전화번호			⑰E-mail		
⑱홈페이지 주소			⑲FAX				

1. 계획의 개요

⑳통상피해 개요 및 통상피해대응계획 추진 목적		
㉑이행기간		년 월 ~ 년 월
사업추진 계획요약	㉒자금조달 운용계획	
	㉓원자재 수급계획	

사업추진 계획요약	㉔계획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계획	
	㉕경영관리 계획	
	※ 통상피해대응계획 이행기간 내 자금조달·운용, 원자재 수급·판로 확보계획, 경영관리(신규채용, 투자계획) 등을 기술	

2. 세부추진계획

가.자금 조달 운영 계획	㉖총소요 금액 (단위: 백만원)	구분		내역	금액
		시 설 자 금	기계시설		
			시험검사설비		
			기타		
		운 전 자 금	기술개발비용		
			원·부자재 구입비 및 인건비 등		
			기타		
		합계			
	㉗조달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 고
		총 소요금액		시설	
				운전	
		자체자금	시설		
			운전		
		통상피해지원 자금 융자	시설		
			운전		
		은행자금 등 기타	시설		
			운전		

나. 원자재 수급계획	- 대체 원자재 수급 국가 발굴 또는 국내 수급계획
----------------	------------------------------

시장성	㉔ 판매 형태		주문판매(%), 시장판매(%), 임가공(%), (내수 %, 수출 %)								
	㉔ 경쟁 현황	제 품 명 (상품 또는 서비스)	시 장 규 모	국 내 생 산 업 체 수	주요기업체명		귀사의 동업계 지위		경쟁 상태		
					1순위	2순위	시설능력	시장지위			
※ 시장규모는 금액 또는 물량기준으로, 동업계 지위는 상·중·하로, 경쟁상태는 과당·보통·독점으로 기재											
다. 계획 제품 (상품 또는 서비스) 영업 계획	㉔ 판매 계획 (단위: 백만원)	품목명 (상품 또는 서비스)	해당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생 산 능 력 (수량·금액)	판 매 처 (업체명)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판매액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내수	수출

라.경영 관리 계획		
마.기술· 경영 혁신 지원 추진 계획	구분	내용
	추진목적	
	추진시기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	
	※ 기술·경영 혁신 지원 희망분야 및 요구수준은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		직전연도 (T-1년)	해당연도 (T년)	1차년도 (T+1년)	2차년도 (T+2년)	3차년도 (T+3년)
	대차대조표						
바. 재무 계획 (단위: 백만원)		총자산					
		자기자본					
	손익계산서	고정부채					
		유동부채					
		매출액					
		매출총이익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비용					
		경상이익					
		법인세					
		당기순이익					
* T : 기준연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상피해대응계획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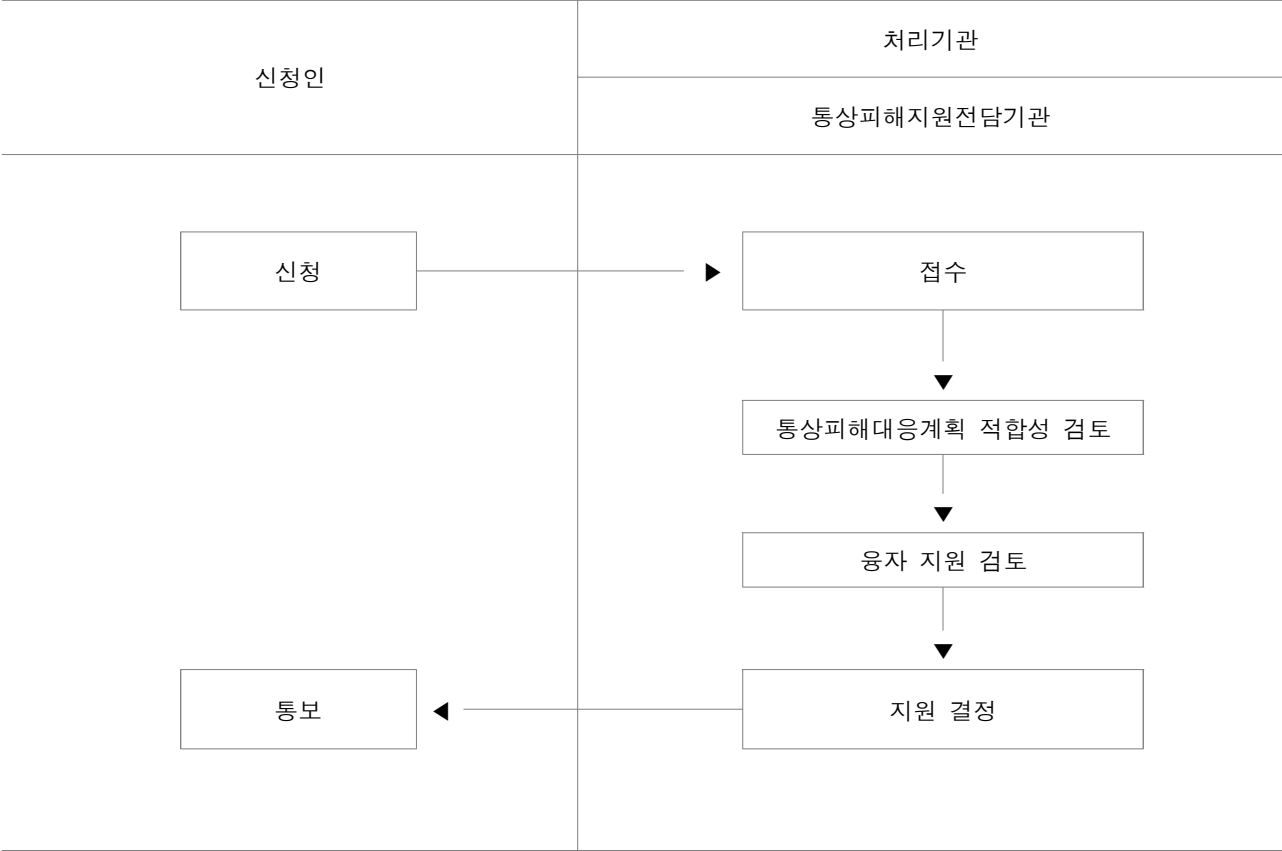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작성 방법

- 1.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2.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3. ⑫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 4. ⑬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처리 절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출자 지원신청서

※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⑨생년월일	
		⑧영문			
	⑩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일			⑪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번호	
	⑫납입자본금			⑬구조조정전문인력수	
	⑭소 재 지				
	연 락 처	⑮전화번호		⑯E-mail	
⑰홈페이지주소		⑱FAX			
신청 현황	⑲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예정)명칭				
	⑳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예정)결성일		㉑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예정)존속기간		
	㉒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예정)출자금규모				
	㉓출자신청액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14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출자 지원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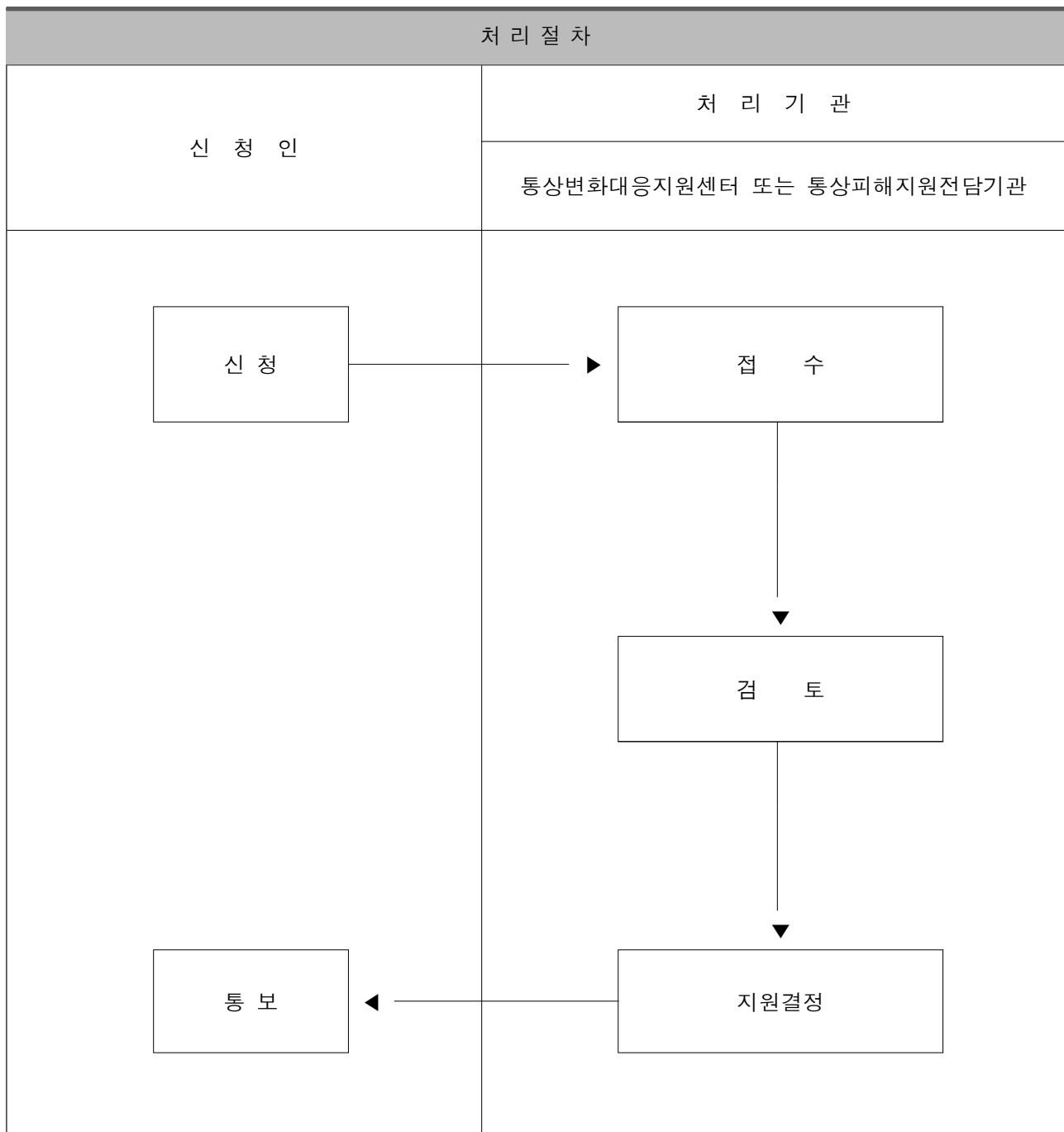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장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직·인사·재무현황 등 회사현황에 관한 자료 1부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1부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①관리번호

신청인	②자 격 [] 근로자대표 [] 사업주	
	③성 명	④생년월일
	⑤주 소	
	⑥전화번호	⑦휴대폰번호

기업 개요	⑧상호(명칭)					⑨사업장관리번호				
	⑩사업자등록번호					⑪설립 연월일				
	⑫소재지									
	⑬전화번호					⑭FAX				
	⑮성명(대표자)					⑯근로자수				
	업종	⑰업종명					⑱주생산품목			
⑱업종코드										

⑳기업 통상영향 유형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무역의 변화로 인하여 제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기업				

신청내용	㉑성 명	㉒생년월일	㉓직종코드			㉔근무기간	㉕근로자 통상영향 유형 1. 실직, 2. 실직예정, 3. 근로시간 단축, 4. 근로시간 단축예정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라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노동청(〇〇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뒤쪽)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기업 - 법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1조제2항제2호라목의 기업 - 법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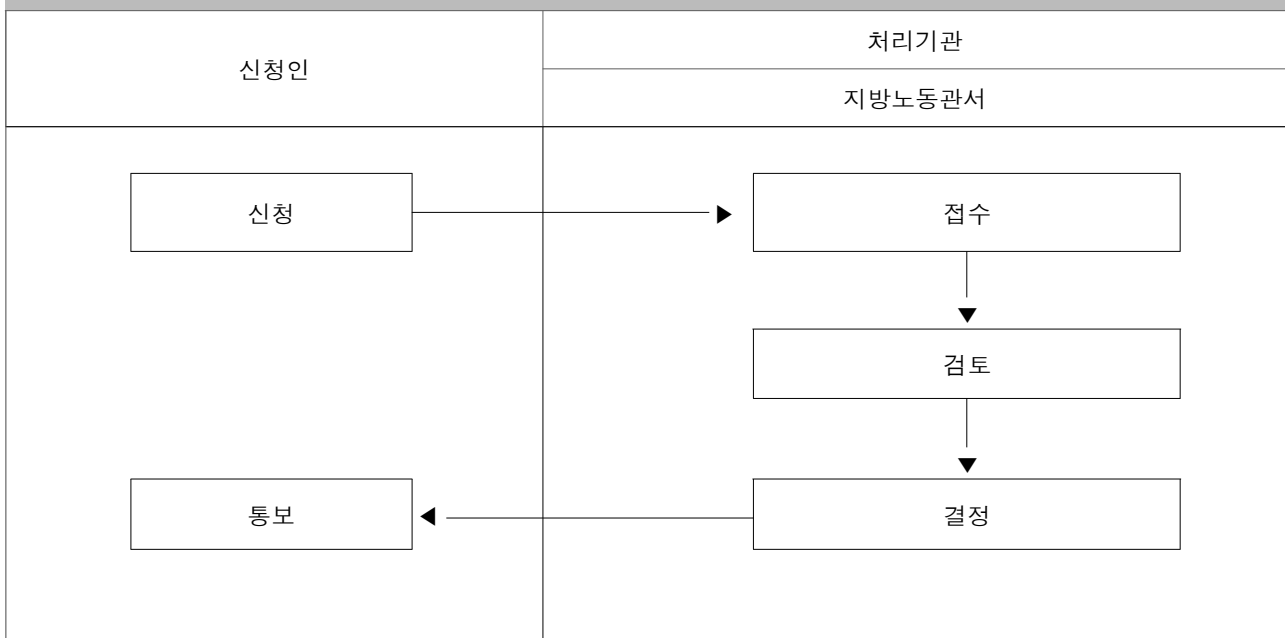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①란은 적지 않습니다.
- ⑪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⑰란은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 ⑱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 ㉑란부터 ㉕란까지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㉚란은 부표[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㉞란은 해당하는 근로자 통상영향 유형 번호에 √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부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관리직(임원·부서장)	011 012 013 014 015 016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전문서비스 관리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경영·행정·사무직	021 022 023 024 025 026 027 028 029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경영·인사 전문가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경영지원 사무원 회계·경리 사무원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금융·보험직	031 032 033	금융·보험 전문가 금융·보험 사무원 금융·보험 영업원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122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132 133 134 135 136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소프트웨어 개발자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정보보안 전문가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교육직	211 212 213 214 215	대학 교수 및 강사 학교 교사 유치원 교사 문리·기술·예능 강사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법률직	221 222	법률 전문가 법률 사무원
사회복지·종교직	231 232 233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군인	250	군인
보건·의료직	301 302 303 304 305 306 307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및 한약사 간호사 영양사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보건·의료 종사자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412 413 414 415 416 417	작가·통번역가 기자 및 언론 전문가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디자이너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512	미용 서비스원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관측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용(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용
	814	냉·난방 설비 조작용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용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관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용
	822	관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용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용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용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용
섬유·의복 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용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용 및 조립원
식품 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용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용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용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 []부지정 통지서

지정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 업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정 또는 부지정 사유				
지정인원			신청일	
일련번호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근 무 기 간	통상영향 유형 1.실직, 2.실직예정, 3.근로시간 단축, 4.근로시간 단축예정
	성 명	생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	-----	----------

①정리번호	②관리번호	③접수번호
-------	-------	-------

신청인	상호(명칭)	④한글	⑥법인등록번호					
		⑤영문						
	성명(대표자)	⑦한글						
		⑧영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설립 연월일		업종	⑪업종명				
				⑫업종코드				
	소재지	⑬본사						
		⑭사업장						
	연락처	⑮전화번호		⑯E-mail				
⑰홈페이지주소		⑱FAX						

신청 현황	근로자수	⑲사무직	⑳자산총액	㉑자본금
		명		
	⑳생산직	백만원	백만원	
	명			
	주생산물목	㉒한글		
		㉓영문		
통상피해 내용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	수수료 없음
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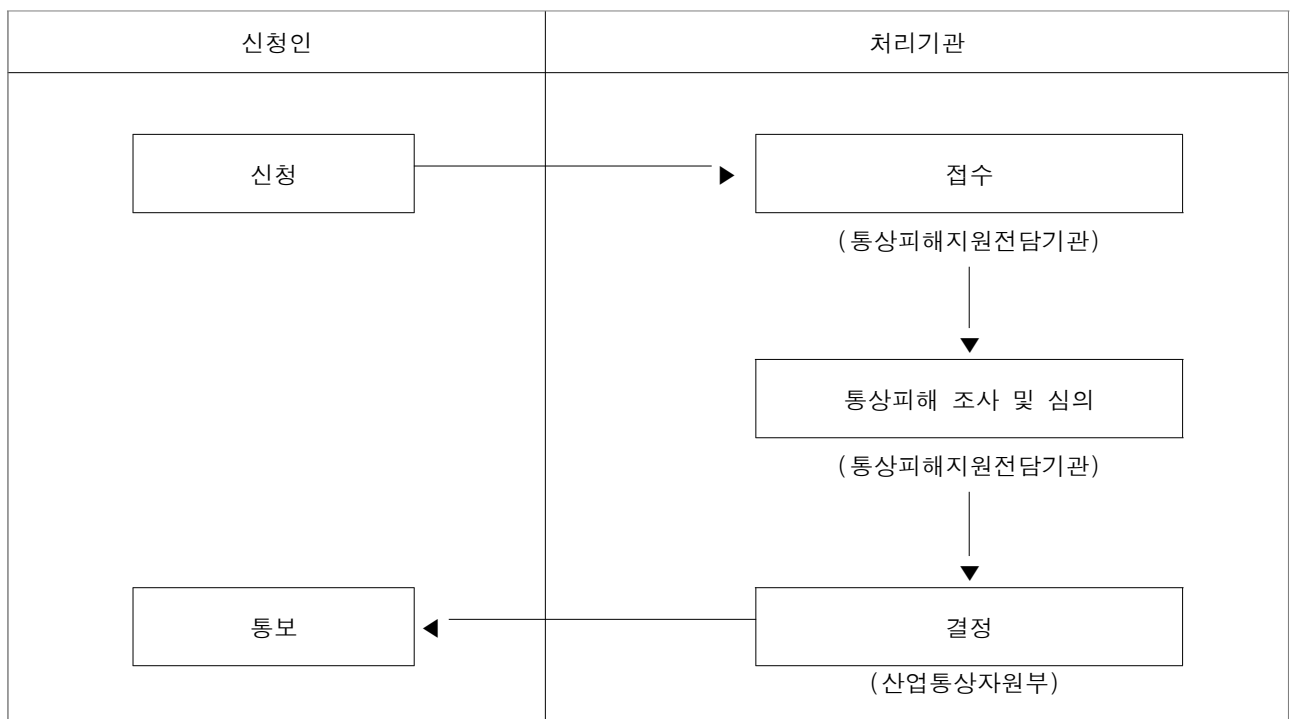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 방법

- ①란부터 ③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
- ⑩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⑪란은 사업자등록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 ⑫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 ⑬과 ⑭란은 최근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일용근로자와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를 제외합니다)의 수를 합하여 3으로 나눈 값을 적습니다.

처리 절차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부지정 통지서

지정번호			
신 청 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신청일		
지정 또는 부지정 사유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	-----	----------

①관리번호

신청인	②자격 [] 근로자대표 [] 사업주	
	③성명	④생년월일
	⑤주소	
	⑥전화번호 또는 휴대폰번호	

기업 개요	⑦상호(명칭)		⑧사업장관리번호	
	⑨사업자등록번호		⑩설립 연월일	
	⑪소재지			
	⑫전화번호		⑬FAX	
	⑭성명(대표자)		⑮근로자 수	
	업종	⑯업종명 ⑰업종코드	⑱주생산품목	

⑲기업 피해유형	[] 통상피해지원기업에 납품을 하는 기업
	[]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신청내용	⑳성명	㉑생년월일	㉒직종코드			㉓근무기간	㉔근로자 통상피해 유형 1.실직, 2.실직예정, 3.근로시간 단축, 4.근로시간 단축예정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 1. [] 2. [] 3. [] 4.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〇〇지방노동청(〇〇〇〇지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첨 부 서 류

신청인 제출서류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각 1부 가. 법 제15조제1항제2호가목의 기업 - 법 제15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나. 법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기업 -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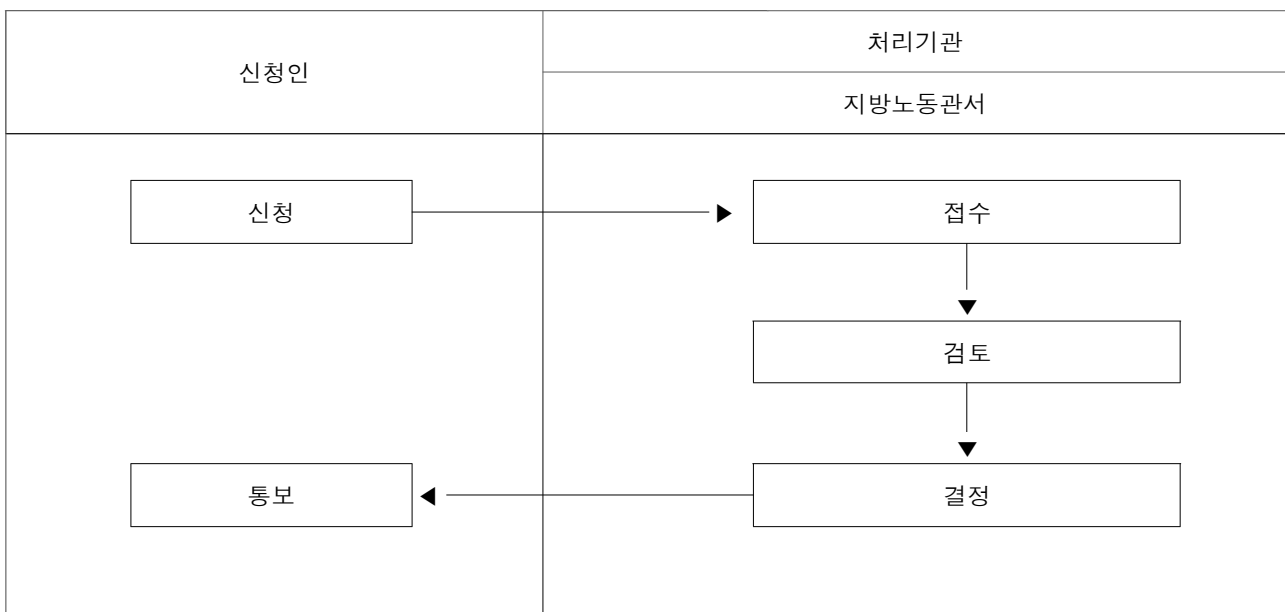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 ①란은 적지 않습니다.
- ⑩란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의 법인 설립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 연월일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⑩란은 사업자등록증명상의 종목을 적습니다.
- ⑪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고시 제2024-2호)의 세세분류 5자리를 적습니다.
-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⑮란은 부표[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를 참고하여 적습니다.
- ⑯란은 해당하는 피해유형의 번호에 √ 표를 합니다.

처 리 절 차



[부표] 한국고용직업분류 중 소분류(136개) 직종현황

관리직(임원·부서장)	011 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012 행정·경영·금융·보험 관리자 013 전문서비스 관리자 014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 관리자 015 영업·판매·운송 관리자 016 건설·채굴·제조·생산 관리자
경영·행정·사무직	021 정부·공공행정 전문가 022 경영·인사 전문가 023 회계·세무·감정 전문가 024 광고·조사·상품기획·행사기획 전문가 025 정부·공공 행정 사무원 026 경영지원 사무원 027 회계·경리 사무원 028 무역·운송·생산·품질 사무원 029 안내·고객상담·통계·비서·사무보조 및 기타 사무원
금융·보험직	031 금융·보험 전문가 032 금융·보험 사무원 033 금융·보험 영업원
인문·사회과학 연구직	110 인문·사회과학 연구원
자연·생명과학 연구직	121 자연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122 생명과학 연구원 및 시험원
정보통신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31 컴퓨터하드웨어·통신공학 기술자 132 컴퓨터시스템 전문가 133 소프트웨어 개발자 134 데이터·네트워크 및 시스템 운영 전문가 135 정보보안 전문가 136 통신·방송송출 장비 기사
건설·채굴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40 건축·토목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제조 연구개발직 및 공학기술직	151 기계·로봇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2 금속·재료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3 전기·전자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4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5 에너지·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6 섬유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7 식품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158 소방·방재·산업안전·비파괴 기술자 159 제도사 및 기타 인쇄·목재 등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교육직	211 대학 교수 및 강사 212 학교 교사 213 유치원 교사 214 문리·기술·예능 강사 215 장학관 및 기타 교육 종사자
법률직	221 법률 전문가 222 법률 사무원
사회복지·종교직	231 사회복지사 및 상담사 232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233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경찰·소방·교도직	240 경찰관, 소방관 및 교도관
군인	250 군인
보건·의료직	301 의사, 한의사 및 치과의사 302 수의사 303 약사 및 한약사 304 간호사 305 영양사 306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307 보건·의료 종사자
예술·디자인·방송직	411 작가·통번역가 412 기자 및 언론 전문가 413 학예사·사서·기록물관리사 414 창작·공연 전문가(작가, 연극 제외) 415 디자이너 416 연극·영화·방송 전문가 417 문화·예술 기획자 및 매니저
스포츠·레크리에이션직	420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종사자
미용·예식 서비스직	511 미용 서비스원 512 결혼·장례 등 예식 서비스원
여행·숙박·오락 서비스직	521 여행 서비스원 522 항공기·선박·열차 객실승무원 523 숙박시설 서비스원 524 오락시설 서비스원
음식 서비스직	531 주방장 및 조리사 532 식당 서비스원

경호·경비직	541 경호·보안 종사자 542 경비원
돌봄 서비스직(간병·육아)	550 돌봄 서비스 종사자
청소 및 기타 개인서비스직	561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562 집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영업·판매직	61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인 612 영업원 및 상품중개인 613 텔레마케터 614 소규모 상점 경영 및 일선 관리 종사자 615 판매 종사자 616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617 관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운전·운송직	621 항공기·선박·철도 조종사 및 관제사 622 자동차 운전원 623 물품이동장비 조작원(크레인·호이스트·지게차) 624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
건설·채굴직	701 건설구조 기능원 702 건축마감 기능원 703 배관공 704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705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706 건설·채굴 단순 종사자
기계 설치·정비·생산직	811 기계장비 설치·정비원(운송장비 제외) 812 운송장비 정비원 813 금형원 및 공작기계 조작원 814 냉·난방 설비 조작원 815 자동조립라인·산업용로봇 조작원 816 기계 조립원(운송장비 제외) 817 운송장비 조립원
금속·재료 설치·정비·생산직 (관금·단조·주조·용접·도장 등)	821 금속관련 기계·설비 조작원 822 관금원 및 제관원 823 단조원 및 주조원 824 용접원 825 도장원 및 도금원 826 비금속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전기·전자 설치·정비·생산직	831 전기공 832 전기·전자 기기 설치·수리원 833 발전·배전 장치 조작원 834 전기·전자 설비 조작원 835 전기·전자 부품·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836 전기·전자 부품·제품 조립원
정보통신 설치·정비직	841 정보통신기기 설치·수리원 842 방송·통신장비 설치·수리원
화학·환경 설치·정비·생산직	851 석유·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52 고무·플라스틱 및 화학제품 생산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53 환경관련 장치 조작원
섬유·의복 생산직	861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862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863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864 제화원, 기타 섬유·의복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식품 가공·생산직	871 제과·제빵원 및 떡제조원 872 식품 가공 기능원 873 식품 가공 기계 조작원
인쇄·목재·공예 및 기타 설치·정비·생산직	881 인쇄기계·사진현상기 조작원 882 목재·펄프·종이 생산기계 조작원 883 가구·목제품 제조·수리원 884 공예원 및 귀금속세공원 885 악기·간판 및 기타 제조 종사자
제조 단순직	890 제조 단순 종사자
농림어업직	901 작물재배 종사자 902 낙농·사육 종사자 903 임업 종사자 904 어업 종사자 905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 []부지정 통지서

지정번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기 업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정 또는 부지정 사유				
지정인원		신청일		
일련번호	통상피해지원근로자		근 무 기 간	통상피해 유형 1.실직, 2.실직예정, 3.근로시간 단축, 4.근로시간 단축예정
	성 명	생 년 월 일		
1				
2				
3				
4				
5				
6				
7				
8				
9				
10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지방노동청(○○○○지청)장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u>시행규칙</u> 제1조(목적) 이 규칙은 「<u>무역조 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 항과 그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1조의2(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 상담지원신청서) 「<u>무역조정 지 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u>」(이 하 “<u>영</u>”이라 한다) 제4조의3제1 항에 따라 <u>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u> 는 별지 제1호서식의 <u>경영안정 및 경쟁력확보를 위한 상담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또는 영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u>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u>(이 하 “<u>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u>”이 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u>	<u>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1조(목적) ----- 「<u>통상환 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u>」 ----- ----- <u>필요한</u> ----- ----- --. <u><삭 제></u>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
여 고시하는 경쟁력확보 상담
지원 무역피해사실 입증서 또
는 통상피해사실 입증서

2. 상담지원 수행계획서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업자등록증명원

5. 그 밖에 경영안정 및 경쟁력
확보 상담지원을 위하여 산업
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2조(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
서 등) ① 「무역조정 지원 등
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
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정을 받
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
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신청
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무역피해사실 입
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
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
정신청서 등) ① 「통상환경변
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
률」-----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 통상영향(우려)
입증서를 첨부하여 「통상환경
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
를 위탁받은 통상변화대응지원

②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2. (생략)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기업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기업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3조(상담지원신청서 등)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상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지원신청서에 상담지원 수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센터(이하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라 한다)에 ---.

② 제1항-----
---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는 -

-----.

-----.

1. 2. (현행과 같음)

③ -----
----- 통상변화대응
지원기업 -----
----- 통상변화대응
지원기업 지정(부지정)통지서-
-----.

제3조(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 등) ----- 기술·경영 혁신 지원-----
기술·경영 혁신 지원신청서를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 또는 영 제2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제4조(융자지원신청서 등)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자금을 융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3.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4. 별지 제5호의2서식의 무역조정계획 또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통상피해대응계획

제5조(출자지원신청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출자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자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신청인이 결성하려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

이라 한다)---.

제4조(융자 지원신청서 등) ----

융자 지원신청서-----

----- 통상변화대응

지원센터 -----

-----.

1. 2. (현행과 같음)

3. 융자금 -----

4. ----- 통상변

화대응계획 -----

제5조(출자 지원신청서) -----

----- 통상변화대응지원센

터 -----

-----.

1. (현행과 같음)

2. -----

----- 기관전용 -----

3. 무역조정지원기업 또는 통상
피해지원기업에 대한 투자계
획서

제6조(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신
청서 등) ①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무역조정지
원근로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
식의 무역조정지원근로자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
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
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
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
을 입증하는 서류

2. (생략)

② (생략)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
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1조제
2항에 따라 무역조정지원근로
자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

3.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

--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 등) ① -----
----- 통상변화대
응지원근로자로 -----

--- 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

1.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해당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통상변화대응지원근
로자 -----

지 제8호서식의 무역조정지원
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를 신
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신청
서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으로 지
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
호서식의 통상피해지원기업지
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통상피해
사실 입증서를 첨부하여 산업통
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
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
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2. (생략)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
18조의2제4항에 따라 지정 여부
를 결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 통상변화대응
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
-----.

제7조(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신
청서 등) ① -----

----- 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
신청서-----

----- 통상피
해지원전담기관에 -----
--.

② -----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

-----.

-----.

1. 2. (현행과 같음)

③ -----

<u>통상피해지원기업지정(부지정)</u> <u>통지서</u>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u>통상피해지원기업 지정(부지정)</u> <u>통지서</u>----- ---.
제8조(<u>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u>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u>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신청서</u>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기업(폐업한 기업의 경우에는 그 폐업한 기업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면 별지 제12호서식의 <u>통상피해지원근로자지정(부지정)통지서</u>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8조(<u>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u> 등) ① ----- ----- ----- ----- <u>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신청서</u>----- ----- -----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통상피해지원근로자 지정(부지정)통지서</u>----- ---.